

의안번호 제66호

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논산시장	
제출연월일	2018. 8 .28.	

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

제66호

제출연월일: 2018. 8. 28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확대하고,

나. 취약지역에 영유아보육 지원이 균형있게 제공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그 외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양성평등기본법에 맞도록 보육정책위원회 특정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 (안 제5조)
- ○「영유아 보육법 시행령」을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으로 변경(안 제8조)
- 제목"(공립어린이집의 설치)"를 "(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"으로 변경(안 제12조)
- 상위법령에 맞도록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내용으로 변경(안 제12조)
-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(안 제2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 평가 : 개선권고안 반영

- 원 안: 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② ~ 다만,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권고안: ② ~ 다만, 금품·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며,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(2)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자체개선안 동의
- (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대상아님
- (4)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

가. 예고기간 : 2018. 7. 23 ~ 8. 13(20일이상)

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(5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- (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저출산고령화대책과(041-635-4221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다만, 금품·향응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을 제외하며,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 중 "「영유아 보육법 시행령」"을 "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- 제12조의 제목"(공립어린이집의 설치)"를 "(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"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-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제17조의 제목 "(위탁 기간)"을 "(위탁기간)"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①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, 장애아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탁자 및 시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- ②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. 제25조 제3호 중 "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"를 "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"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4.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관부서	성 명	
입	사회복지과장	이 영 임	
안 아동보육친화담당		최 영 숙	
자	담 당 자	정 윤 경 (746-5352)	

□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	제5조(위원회의 구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	②
제8조(위원의 해촉)	제8조(위원의 해촉)
제8조(위원의 해촉) 위촉직 위원이 <u>「영유아 보육법</u> 시행령」제10조의3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	제8조(위원의 해촉)
위촉직 위원이 <u>「영유아 보육법</u> <u>시행령」</u>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	
위촉직 위원이 <u>「영유아 보육법 시행령」</u> 제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.	<u></u> 「영유아보육법 <u>시행령」</u>

개 정 \circ } 혀 했 제17조(위탁 기간) 제17조(위탁 기간) ①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①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의2에 따라 5년으로 하며. 시장이 3년으로 한다.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어린 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 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. 다만. 장애아보육을 전담으로 하는 수 탁자 및 시에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한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수탁자가 기간 만료 ② 재위탁기간이 끝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공개모 후에 재 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집에 참여 할 수 있다.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. ③ (생 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25조(보조금의 반환) 제25조(보조금의 반환) (생략) (현행과 같음)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

- 2. (생략)
- 3. <u>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</u>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
- 4. <u>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</u> 한 경우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<u>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</u> -----
- 4. <u>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</u>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붙임

비용추계서

- 2. 비용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해 당 없 음

나. 추계결과 : 해 당 없 음

3. 작성자

사회복지과장 이 영 임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 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 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 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 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여성가족부장 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④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(이하 이 조에서 "관리직 목표제"라 한다)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3. 2.> 1. 직종·직급·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.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.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.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.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 야 하고,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
□ 「영유아보육법」

제12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- 1.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
- 2. 「건축법」에 따른 공동주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
-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명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명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 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· 운영자,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,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- 1.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
- 2.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4. 삭제<2011.8.4>
- 5.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
□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

- 제24조(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는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 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3.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4.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- 5. 어린이집 운영계획서(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 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(이하 "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 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⑦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 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.
-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,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변경 사유서

- 2.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(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-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고,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4조의2(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)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.

[별표 8의2] <개정 2015.1.28.>

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(제24조의2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.
- 나.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,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.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- 다.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라. 신청자격

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)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2)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
- 3)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
- 4)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- 마.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(영아·장애아·다문화아동·시간연장형 보육)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바.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

사.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.

아. 심사결과,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.

2. 심사기준

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,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심사항목	항목별 점수
가. 어린이집 운영계획	40
나.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	35
다. 운영체의 운영실적	10
라. 운영체의 공신력	10
마. 운영체의 재정능력	5
합계	100

3. 심사결정

- 가.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·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.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.
- 나.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(어린이집 운영계획), 나목(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), 다목(운영체의 운영실적)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.
- 4. 그 밖에 공고,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,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018년도 보육사업안내p20

- 6.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
- 4) 위탁기간
-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. 다만,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가능

참고 2

법제처 규제개선 정비대상 등 반영내용

연번	조례 위임사항	조례 위임사항 개정이유	조례 개정반영
1	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확대	상위법령에 맞게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에 영유아보육지원이 균형있게 제공되도록 개선	제12조제1항에 반영 제12조(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 여야 한다.